
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 - 225호

「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2월 22일

국토교통부장관

1. 개정이유

보호 종료 전 보호시설 밖에 거주하는 “보호연장아동” 개념이 신설 (『아동복지법』 개정, ‘21.12월)됨에 따라 보호종료아동(보호조치 종료 예정자 또는 시설 퇴소예정자 포함)에 대한 임대료 감면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임)

2. 주요내용

가. 무상지원 지원대상자 중 「아동복지법」 제16조에 따라 ‘보호조치가 종료되기 이전’은 만 18세 이전으로, 해당 규정은 실효성이 없어 삭제하고 무상지원 대상을 “만 20세”로 단일화 (안 제7조)

나. 시설에서 나오는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율을 50% 인하하여 적용한 기존 규정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“보호종료아동(보호조치 종료예정자 또는 시설 퇴소예정자 포함)

인 경우 시설에서 나와 거주한지 5년(군복무기간 제외)”으로 명확화 (안 제7조)

다. 제1호, 제2호 외의 보호종료아동에 대해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율 적용을 명확화 (안 제7조)

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(주거복지지원과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행정예고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(<http://www.molit.go.kr> → 정보마당 → 법령정보 → 입법예고·행정예고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(우편번호: 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

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

- 팩 스 : 044-201-5572

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lit.go.kr>) 『정보마당-법령정보/입법예고』란을 참조하시거나, 국토교통부 주거

복지지원과(전화 044-201-4479, 4535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